

의안 번호	제3512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0월 7일 김포시장
- 나. 상 정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- 다. 의 결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
2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 격려를 위하여 각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자동 소멸이 아닌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-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을 때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(안 제23조)
- 나.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(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2023. 7. 18.자 개정사항 반영)
(안 별표 3)
- 다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(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2024. 7. 2.자 개정사항 반영)(안 별표 3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 규정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(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)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, 이를 통해 시급한 업무의 추진 등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 가능한 기한이 지나는 피해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연한 업무 추진 및 휴가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직원의 복리 또한 증진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2023년 7월 18일자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이 약 1년이 지연되어 김포시 조례에 반영되는 점과 관련하여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, 그간 상위 규정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맞게 대상자에게 경조사 휴가 일수(15일)가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생략
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